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2
----------	-----

2025. 9. 1.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2025. 8. 14. 김형대 의원 등 7인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 1.)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김형대 의원)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구청과 경찰서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가. 조문 내용별 검토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특성과 강남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만 제2항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력하는 것은 정책적·행정적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이를 조례상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여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집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를 거부하여도 조례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 부재로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¹⁾을 고려해볼 수 있음.

1)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가능 범위 내에서 협조하도록 한다.” 로 수정하면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협력

나.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2021. 1. 1.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된 이후,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 간 협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비록 자치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지만, 이를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으며,
- 관련 판례²⁾, 법제처 의견³⁾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를 지원하는 조례를 기초지자체가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자치경찰사무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판단됨.
- 다만, 법적 타당성과 별개로 해당 조례안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써, 강남구의 특성과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력 협력, 방향, 실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의지를 제도화할 수 있음.

2) 대법원2013.4.11. 선고2012추22판결

3) 법제처2025.5.9. 의견제시25-0112, 법제처2024.10.29. 의견제시24-0358, 법제처2023.12.29. 의견제시23-0333, 법제처2018.9.21. 의견제시18-0181, 법제처2018.9.21. 의견제시18-0179참조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552

제안연월일: 2025. 9. 1.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1. 수정이유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협력체계 구축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수서경찰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③ (생략)</p> <p>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수서경찰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u>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② <u>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p>	<p>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 ----- <u>관계 기관</u>----- ----- ----- -----.</p> <p><u><삭 제></u></p>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특성과 강남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생활안전·교통·경비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남·수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
(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2
----------	-----

발의연월일: 2025. 8. 14.

발 의 자: 김형대·윤석민·강을석·
황영각·이동호·노애자·
이향숙 의원(이상 7인)

1. 제안이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구청과 경찰서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 다.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특성과 강남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생활안전·교통·경비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남·수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수서경찰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